#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2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이병진·조 국·신영대

송옥주 · 윤후덕 · 전현희

조승래 · 김준형 · 복기왕

권칠승 · 김영배 · 서삼석

한정애 · 정준호 · 이상식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음.

하지만, 고지정보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람이외에는 고지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유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 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6항,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및 제5항에"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를 "제7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고지절차"를 "고지절차, 제6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절차"로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
	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50조제4
	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ㆍ이동통
	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하여
	<u>야 한다.</u>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	<u>⑦</u>
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u>제4항</u>	제4항부터
및 제5항에 따른 송부 및 게시	제6항까지에
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 • 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u> ⑨ 제7항에</u>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	
민센터의 장은 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⑧ 삭제	⑧ 삭제
<u>⑨</u> 고지명령의 집행 및 <u>고지절</u>	<u>⑩</u> <u>고지절차,</u>
<u>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	제6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절

족부렁으로 정한다.

<u>차</u>-----.